

##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 31. 김성인 의원외 3
- 나. 회 부 일 자 : 2001. 2. 3
- 다. 상 정 일 자 : 2001. 2. 3  
(제91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성 인 의원
- 나. 개정사유
  -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의 융자액을 상향 조정하고 포괄적인 융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연대보증 제도 개선,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을 지도감독, 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융자대상 확대
    - 농, 립, 축, 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판매사업.
    -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 농지구입 자금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
    -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
  - 융자금 한도 상향 조정
    -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이내 → 3,000만원 이내
    - 단체는 1단체 당 5,000만원 → 6,000만원 이내
  - 융자금의 연체이율 조정

·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 도 농어촌 진흥기금 연체율에 준한다.

○ 연대 보증 방법 개선

· 용자 연대보증은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을 시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 이상의 연대보증

○ 소속공무원은 연1회 이상 지도감독 의무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첨부 :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용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판매사업
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3.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4. 농지구입 자금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
5.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6.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용자금)①용자금은 개인은 1인당 3,000만원 이내, 단체는 1단체 당 6,0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4%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도 농수산업진흥기금 이자율에 준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전항의 용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단,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용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한 세액이 연간 20,000원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12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 공무원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